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1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3011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구합1360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 7, 9 내지 16항 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14

재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 7, 9 내지 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2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위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만이 청구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청구취지' 부분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원고 청구 기각 부분 중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 7, 9 내지 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1, 3, 4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14

○ 제1심판결 제3면 제18, 19행 사이에 "1) 주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제1 내지 16항"을 "제1 내지 4, 7, 9 내지 16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예비적 주장

실제 기부채납된 부동산이 협의 당시와 다소 변동이 있어 그 전부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더라도, 최소한 협의 당시와 그 위치나 면적에 전혀 변동이 없는 별지 5 목록 기재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 18행의 "이 사건 토지들 ... 나머지 토지들은"을 "이 사건 토지들은"이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나아가 2016. 6. 24. 자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고시까지 있었던 사실"이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의 "앞서 등 증거"를 "앞서 든 증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제1 내지 15항"을 "제1 내지 4, 7, 9 내지 15항"으로, 제12행의 "제1 내지 9항"을 "제1 내지 4, 7, 9항"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의 "도시관리계획에"를 "도시관리계획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3, 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갑 제25, 27, 28, 29,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Z가 피고에게 2010년경 제출한 정책제안서나 기부채납 의향서 등을 통해 종합의료시설 부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14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위 2011두17363 판결은, 납세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납세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나 납세자와 행정관청 사이의 기부채납약정이 없었지만, 납세자가 이미 해당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실제로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 7, 9 내지 15항 기재 토지를 취득할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피고와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었고, 이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 7, 9 내지 15항 기재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 힘든 이상, 그 취득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고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되기까지 별지 5 목록 기재 토지 부분들(다만 앞서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인 제16항 토지는 제외, 이하 같다)에 대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협의 당시와 그 위치나 면적에 전혀 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을 이유로 별지 5 목록 기재 토지 부분들이 같은 시기에 취득한 나머지 토지 부분들과 달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그러므로,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 7, 9 내지 15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14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14

별지 2

목 록(토지 및 처분의 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이전일	취득세 등
1	[redacted]시 L동	M	답	2,700		30,126,823원
2	[redacted]시 L동	N	답	836		9,328,157원
3	[redacted]시 L동	D	전	2,292		25,574,326원
4	[redacted]시 L동	O	전	222		2,477,095원
5	[redacted]시 L동	P	전	-	2014. 4. 22.	-
6	[redacted]시 L동	Q	전	-		-
7	[redacted]시 L동	R	대	980		10,934,921원
8	[redacted]시 L동	S	임	-		-
9	[redacted]시 L동	B	임	192,110		2,143,579,314원
10	[redacted]시 L동	E	임	21,342		241,763,355원
11	[redacted]시 L동	K	임	26,963		311,864,830원
12	[redacted]시 L동	T	임	11	2015. 3. 31.	122,739원
13	[redacted]시 L동	U	임	111		1,228,437원
14	[redacted]시 L동	V	임	68		1,449,776원
15	[redacted]시 L동	W	임	932		10,399,334원
16	[redacted]시 L동	F	임	47	2017. 4. 10.	1,379,997원
17	[redacted]시 L동	F	임	106		3,220,043원
18	[redacted]시 L동	I	전	497		27,650,790원
19	[redacted]시 L동	H	대	247		11,823,790원
20	[redacted]시 L동	G	대	18	2017. 12. 29.	
21	[redacted]시 L동	X	도	317		26,684,070원
22	[redacted]시 L동	Y	도	9		
합계				249,808		2,859,607,797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14

별지 5

목 록(예비적 주장 관련 토지들 및 처분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이전	과세표준(원)	취득세등(원)
1	L동	M	답	2,438	14-04-22	90,000,000,000	27,203,405
2	L동	N	답	836			9,328,157
3	L동	D	전	944			10,533,230
9	L동	B	임	170,380			1,901,114,172
10	L동	E	임	1,231	15-03-31	7,600,000,000	13,944,836
11	L동	K	임	15,154			175,277,218
13	L동	U	임	111			1,228,437
15	L동	W	임	835			9,317,000
16	L동	F	임	47	17-04-10	30,000,000	1,379,997
소계(1~16)				191,976		97,630,000,000	2,149,326,452